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계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찰공고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입찰희망자가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

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으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4조(평가기준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사업 수행능력, 입찰가격, 기타 당해 사업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는 $\pm 20\%$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내지 별표3에서 배점한도의 조정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범위에 의한다)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은 후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입찰 참가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의 배점점수를 합한 점수가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0점 이상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

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각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시 **당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적용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제1항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타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달성에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관련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2.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④ **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에게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협상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13조(협상금액) ① 당해 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당해 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제13조의2(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의3(평가위원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업무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장 기술·가격분리입찰 절차

제14조(적용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수한 공법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2. 특별한 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3. 독창적인 설계기법(고도의 환경설계기법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제15조(제안서의 평가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

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안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밀봉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한다.

③ **당해 발주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조사·확인 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자의 직접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금액) ① 제15조 제2항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하되,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내로 한다.

② 제안자의 제안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의 협상금액은 본인의 제안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90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② 고시금액 이상 10 억원 미만인 건설엔 지니어링(1억원 이 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 밀안전진단 포함)	③ 10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인 건설 엔지니어링	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부표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 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	평점 = 7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평점 = 80 / 100 × 평가점수	소수점 3 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점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비고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평점(점)=70-2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는 평점 65점 적용

② 평점(점)=30-2×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5% 이상인 경우는 평점 25점 적용

③ 평점(점)=20-2×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 이상인 경우는 평점 10점 적용

④ **평점**(점)= $20-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는 평점 5점 적용

2.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당해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절차에 의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세부평가사항, 배점범위, 평가기준·방법 및 가·감점 사항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정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적격심사결과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	80	※ 평점 = 80/100×평가 점수(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
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부표】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가기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참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50	- 설계· 건설사업관리 ·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 개월이상	108 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 과 동일하게 평가				
	· 기술인등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에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에 적용)	- 경영상태	34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7)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 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입찰참가제한	(2)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정지	(2)	· 평가대상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 기준(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공고번호	
입찰일시	
건설엔지니어링명	
사업기간	
수요기관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에 적용)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설엔지 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건설엔지니어링명				구 분	설 계() 건설사업관리() 기 타()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 고
증 명 서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